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0-21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거창군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안전검토를 심도 있게 하기 위하여 심사수당 지급 근거를 신설하고 조례를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문장 및 용어를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을 변경함

1)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2) 위원회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수당과 실제 경비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하기 위한 조례이므로 취지에 맞게 변경

나. 위원회 위원의 수당지급 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3조)

1) 변경 : 일비 ⇒ 참석수당

2) 신설 : 심사수당

3) 지급제외 : 거창군 소속 공무원, 거창군의회 의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과 법리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0. 2. 5.~2. 24.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전부반영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수당과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수당) ①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대면회의에 한정한다)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지명된 위원이 자료수집 또는 안전검토 등 심사를 하여 이를 위원회에 보고(서면보고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나 거창군의회 의원인 위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적용하지 않는다.

제5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한 경우에는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위원 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심사를 하여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